



제270회 임시회
2008. 5. 19

전문위원 검토보고

○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사회전문위원

-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8년 5월 6일
- 회부일자 : 2008년 5월 9일

□ 제안이유

- 충청북도학생회관과 통합하여 신설되는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의 설치 목적, 위치 및 업무를 정하고자 함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도서관법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법령 명칭, 조문 및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제4절 제명을 “충청북도학생회관”에서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으로 변경함(안 제4절)
- 나. 교양증진, 소질계발, 정서 순화 등 감성교육에 기여하고, 다양한 체험학습과 미래 첨단산업인 바이오 교육체험을 통하여 창의적인 학생교육문화를 창달하고자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을 설치함(안 제17조제1항)
- 다.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의 위치는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영동 79번지에 두며, 일부는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511-9,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내덕1동 322-19번지에 둠(안 제17조제2항)

라.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장의 사무를 정함(안 제19조)

- (1) 청소년들의 품성함양과 학력신장, 창의성 제고를 위한 체험프로그램 기획·운영
- (2) 학생문화 축제, 각종 문예활동 등을 위한 공연·전시 운영
- (3) 유관기관과 연계한 미래 첨단산업인 바이오교육 과학체험
- (4) 평생교육 및 생활체육 지원
- (5) 기타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의 부속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소속교육기관 설치에 따른 인용조문을 변경함(안 제1조, 제8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26조제1항, 제29조)

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실업계고등학교”를 “전문계고등학교”로 변경함(안 제6조, 제26조제1항, 제28조)

사.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도서관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인용되는 법 명칭, 조문 및 내용을 변경함(안 제14조제1항, 제16조, 제30조제1항 및 제3항)

□ 검토의견

○ 조례안 개정사유

-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에 위치한 충북학생교육문화원이 오는 7월 개관을 앞두고 현행 충북학생회관과 통합운영 하는 것으로써 그에 대한 목적과 업무를 정하는 것이며,
- 또한,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문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임.

○ 충북학생교육문화원의 명칭에 대하여

- 당초에는 가칭)충북바이오교육회관으로 하여 사업을 시행하였는데 본 조례안에서는 충북학생교육문화원으로 기관 명칭을 선정하였음.
- 이에 따라 기관의 명칭 선정시 각계 각층의 의견수렴 여부, 설문조사 실시여부, 등 명칭선정의 배경등에 대해 설명이 필요함.

○ **충북학생교육문화원의 운영 체제에 대하여**

- 충북학생교육문화원의 시설운영에 있어서 도교육청 소관의 충북학생교육문화원과 충북도 소관의 충북바이오전시관 등 이원화 시설로 운영됨에 따라 이들 시설의 이원화 체제에서 시설물의 관리, 공공요금 납부 등 어려움이 예상될 것으로 사료됨.
- 문화원의 위치가 상당구 영동, 주중동, 내덕1동 등 3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들의 기능과 업무처리 방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충북학생교육문화원의 기구 및 인력운용**

- 먼저, 기구운영과 관련하여 충북학생교육문화원 설립이 현행의 충북학생회관과 통합 운영됨에 따라 이들 통합운영의 장.단점, 그리고 현행의 기구와 개정의 기구는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 인력 운용 면에 있어서는 원장의 직급, 인력증원의 확보방안, 그리고 교육문화원의 위치별(상당구 영동, 주중동, 내덕1동) 3곳에 대한 인력운용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직급별 정원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제규칙」에 포함할 사항임.

붙임 :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